

한국의 재해구호의연금 지원제도 개선방안

이재은

충북대학교 행정학과

이 연구는 효율적인 이재민 지원을 위해 재해구호의연금의 성격에 맞는 합리적인 의연금 지원 제도를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는 최근 들어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규모가 점점 더 커지고 있고 그 피해 범위도 확대되고 있어 현행 의연금 지원제도 운용을 통해서 이재민 구호의 본래 목적 달성이 어려울 것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먼저, 재해구호의연금의 본질적인 의미와 함께 의연금 지원제도의 유형 및 기준을 살펴 보았다. 다음으로 기존의 의연금 제도 및 새로운 방안을 중심으로 일반시민, 이재민, 공무원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연구의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위로금 성격의 의연금 현금 지원은 슬픔과 고통의 위로와 격려 및 생필품 구입 등 생계지원을 위한 목적 달성을 위해 현금지원 방식이 유지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위로금 성격의 현금지원뿐만 아니라 재건의연금 지원, 생활의연금 지원, 복지의연금 지원을 위한 제도가 함께 마련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재해지역 이재민의 복구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봉사단체 활동에 대한 지원을 하는 것이 요구된다. 넷째, 이재민 중에서도 독거노인 가정 등 소외계층에 대한 추가지원을 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재민 입장에서 이들이 필요로 하는 도움과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구호활동과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이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의연금으로 충당하는 방식이다. 다섯째, 의연금의 바람직한 지원 형태를 제도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향후에는 고객의 의사와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수요자 중심 시스템으로 변화가 우선되어야 한다.

주제어: 이재민, 재해구호, 의연금 지원

I. 서론

현대 사회에서는 과거 농경사회나 산업사회보다 지구 온난화 등으로 인한 기상 이변 현상에 의한 자연재난의 피해 규모가 대형화 되고 있다. 자연재난으로 인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정부는 물론 국민 모두 상부상조의 정신으로 민간 차원에서 이재민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나타나고 있다. 재난 피해 현장에서 이재민의 피해 복구를 돕기 위한 자원봉사 활동은 물론 이재민의 아픔을 위로하기 위한 의연금 모금 등의 활동이 그것이다.

재난이 발생하면 일반 국민들과 언론들은 그 피해 규모 내지 피해액이 얼마나 되는지 여부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다. 또한 그 피해규모에 따라 각종 재난지원금과 의연금품이 지급된다. 따라서 재난으로부터 발생하는 피해를 정확하게 조사하는 것은 자원의 효율적 배분 및 활용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우리나라의

재난피해 지원체계를 살펴보면, 소관부처에 따라 지원 항목과 재원별 부담률이 구분되어 있다. 그리고 주요 지원내용은 이재민의 구호를 위한 지원, 재난복구사업을 위한 지원, 기타 재난대책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등으로 구분된다. 특히, 이재민 구호 및 생계를 위한 지원으로서 응급 구호, 장기 구호, 생계지원, 고등학교 학자금(수업료) 면제 등이 있으며, 이에 따라 피해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현행의 이재민 구호 및 생계지원을 위한 피해조사는 주택이 침수 또는 반파 이상 피해를 입은 이재민을 대상으로 조사, 주택의 반파 또는 전파·유실 피해를 입어 장기생계구호가 필요한 이재민을 대상으로 하는 조사, 재난으로 인하여 주생계 수단인 농·임·축·어·염업이 피해를 입어 생계지원이 필요한 농·임·축·어 및 염생산자를 대상으로 하는 조사 및 농작물, 산림작물, 염생산시설, 농림시설, 축산물 증식시설 및 가축, 어선, 어망·어구, 수산물 증식·양식시설, 수산생물이 50% 이상 피해를 입은 자를 대상으로 하는 조사 등이 있다. 즉 재난으로 인한 피해조사는 크게 주택피해조사와 생계수단 피해조사로 구분될 수 있다. 그러나 현행 피해조사 체계에서 의연금품 지급을 위한 피해조사와 이 중에서 소상공인에 대한 피해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현행 의연금품 지급을 위한 피해조사는 별도로 시행하지 않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제20조와 제61조, 제66조 등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등 재난관리 책임기관에서 시행한 피해조사를 근거로 하여 의연금품을 지급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의연금과 관련하여 중요하게 대두되는 쟁점은 현행 의연금 지원 제도에 대한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의연금에 대한 지급 범위 및 기준과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한 재설정이 필요하다. 이성과 같은 연구의 필요성하에서 이 연구에서는 수요자 중심의 효율적인 이재민 지원을 위해 재해구호의연금의 성격에 맞는 합리적인 의연금 지원 제도를 마련하

는데 목적이 있다.

II. 의연금의 의의와 지원제도에 관한 이론적 논의

1. 의연금의 의의

의연금(義捐金)은 사회적 공익이나 자선을 위하여 내는 돈(표준국어대사전, 2007)으로 정의된다. 즉 의연금은 발생한 상황에서 사회적 공익이나 이재민에 대한 자선을 위하여 내는 돈으로 그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 이 때 사회적 공익은 사회 전체의 이익을 의미하고, 자선은 남을 불쌍히 여겨 도와준다는 의미로 정의할 수 있다(표준국어대사전, 2007). 따라서 재해의연금은 재난이 발생한 상황에서 사회 전체의 이익이나 이재민을 불쌍히 여겨 도와주기 위해 내는 돈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의연금은 기부금과 의미상 차이가 있다. ‘의연금’이 ‘사회적 공익이나 자선을 위하여 내는 돈’으로서 직접적으로 타인을 돕는 행위인데 반하여, ‘기부금’은 ‘자선사업이나 공공사업을 돕기 위하여 대가없이 내놓은 돈’으로 정의(표준국어대사전, 2007)되어 타인이나 기관이 수행하는 사업을 도움으로써 간접적으로 타인을 돕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의연금은 기부금 모금 활동과 다소 상이한 성격을 지닌다. 대체로 기부금의 모금은 지역사회에 불우한 이웃을 돕거나 그 지역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데 초점을 두고 진행되는 것이 보통이다. 또한 기부금 모금을 통하여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영리 조직들은 그 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제반 경비를 견고하고 있는 것이 보통이다.

일반적으로 의연금은 성금의 틀 안에서 논의될 수 있다. 즉 성금의 다양한 유형 중의 하나로 의연금을 이야기 할 수 있다. 그리고 성금은 정성으로 내는 돈(표준국어대사전, 2007)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성금은 정성으로 돈을 내는 기부자의 의도를 지니

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그러므로 성금은 기부자의 의도를 반영하여 여러 가지로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의연금의 지니는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의연금은 기부자의 의도를 반영하여 재난 피해 상황에서 사회 전체의 이익이나 이재민에 대한 자선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돈이라고 이해될 수 있다. 둘째, 의연금은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상태에서 모금이 이루어진다는 특징이 있다. 셋째, 의연금은 모금 기관이 수행하는 사업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전달을 대행해주고 있는데, 국민정서 상 일시적인 구호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재해복지 차원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가의 문제가 대두된다. 넷째, 현재 의연금의 경우에는 기부자의 의도보다 공공적 부분을 더 고려한다는 특징이 있으며, 지원 기준은 인명피해와 주택피해, 생계유지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다.

2. 의연금 지원제도의 유형 및 기준

이재민들의 정상생활 복귀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재해의연금 지원 사업을 보다 세분화하여 유형화하고 이에 따라 지원 범위 및 내용을 설정하는 것이 요구된다(이재은·유현정, 2009: 131-156). 재해의연금 지급 범위는 시간적 범위와 공간적 범위를 기준으로 하여 의연금 지급 범위를 구분할 수 있다. 먼저, 시간적 범위에서 보면 단기의 경우에는 위로금 성격의 의연금을 현금 지원하고, 중기와 장기는 현금이 아니라 지원 사업을 통해 이재민에게 도움을 준다 고 가정해 보자. 다음으로, 공간적 범위에서 보면 현재 재해발생 지역과 과거 재해발생 지역으로 구분하고 이를 <표 1>과 같이 설정하여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의연금 지원의 유형

공간 \ 시간	단 기	중·장기
현재 재해발생 지역	응급의연금 지원	재건의연금 지원
과거 재해발생 지역	생활의연금 지원	복지의연금 지원

첫째, 현재 재해 발생 지역에 대한 단기적 차원의 의연금 배분은 응급의연금(emergent donation) 지원의 성격을 지닌다. 즉 현재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긴급하게 자금이 필요한 부분에 사용할 수 있는 위로금 성격의 의연금이 배분된다. 둘째, 현재 재해 발생 지역에 대한 중장기적 차원의 의연금 배분은 재건의연금(recovery donation) 지원의 성격을 지닌다. 현재 발생한 재난 피해로 인한 이재민의 생활을 정상상태로 회복시키기 위하여 지원 사업을 벌이는 경우이다. 재건의연금은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사회의 시민단체, 기업 등과 연계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과거 재해 발생 지역에 대한 단기적 차원의 의연금 배분은 생활의연금(livelihood donation) 지원의 성격을 지닌다. 과거에 발생한 재난 피해로 인해 정상 생활로 회복되지 못한 이재민들의 생계유지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위로금 성격의 의연금을 지원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이다. 생활의연금은 지역사회, 사회복지단체 및 시민단체와의 연계를 통해 지원하는 것이 요구된다. 넷째, 과거 재해 발생 지역에 대한 중장기적 차원의 의연금 배분은 복지연금(welfare donation) 지원의 성격을 지닌다. 과거에 발생한 피해로 인해 단기적 지원을 통해 정상생활로 복귀하기 어려운 이재민에게 복지사업을 통한 서비스 지원에 의해 생활이 영위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단체 및 시민단체 등과의 협력을 통해 지원하는 것이 요구된다. 특히, 기초생활 수급자는 생활이 매우 어려운 사람을 의미하며, 이재민의 경우에는 단기간에 이재민으로 전락한 경우로서 적응에 어려움이 많은 사람들이다. 따라서 사회복지 수준으로 복지혜택을 받아야 하지 않는가의 문제가 제기된다. 즉 이재민의 필요 사항은 위로 이상이며, 따라서 사회복지의 많은 활동들이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결국 이재민에 대한 지원에 있어서도 사회복지의 수단이 도입될 필요성이 있다.

현재 의연금은 이재민에 대한 의연금 지급, 이재민

재해구호를 위한 물품구입, 의연금품 모집배분관리 경비, 협회의 운영, 기타 소방방재청장이 재해구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5가지 사항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소방방재청 훈령 제79호, §3①). 의연금의 지원은 재해로 인한 사망자 유족 등에 대한 의연금, 주택침수피손에 대한 의연금, 생계지원 대상 피해에 대한 의연금 등으로 대상을 정하고 있다. 재해로 인한 사망자 유족 등에 대한 의연금은 사망실종자의 유족인 세대주(1,000만원)와 세대원(500만원)에게 지원되며, 부상자인 세대주(500만원)와 세대원(250만원)에게 지급된다. 주택침수피손에 대한 의연금은 주택전과(세대당 500만원), 주택반과(250만원), 주택침수(세대당 100만원)의 경우 지원된다. 생계지원 대상피해에 대한 의연금은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생계지원과 학자금 면제를 받는 농가어가임가염생산가 등에게 세대당 100만원이 지원되며, 소상공인의 경우에도 세대당 100만원이 지급된다.

3. 선행연구 검토

재해구호와 의연금 지원에 관한 국내외 선행연구로는 이재원(2000), 이계복(2001), 신선인(2001), 김승권(2002), 심성화(2004), 이재은양기근(2006), 이주호(2007), 이재은유현정(2009), Jalali(2002), Wordon and Yitzhaki(2002), Morris(2003), Shaw and Goda(2004), Paul(2006), Thomas and Fritz(2006), Kutz(2007), Sobel and Leeson(2007) 등이 있다. 이 중에서 이재민 지원제도에 관한 대표적인 선행연구인 이재원(2000), 김승권(2002), 이재은양기근(2006), 이재은유현정(2009), Wordon and Yitzhaki(2002), Morris(2003), Paul(2006), Thomas and Fritz(2006)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의연금 지원제도에 관한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이재원(2000)에 의하면, 재해 발생

이후 재원과 물자가 부족하기 보다는 이를 관리하고 이재민들에게 지원하는 구호 행정이 체계화되지 않아 기대되는 수준의 구호활동이 전개되지 못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구호품 전달체계의 개선을 위해서는 구호품 지급 기준의 이원화, 현장중심 전산망 구축, 권역별 관리 체계 구축, 민간 구호 파트너십 구축, 중앙정부연론구호감사 협조 체계가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김승권(2002)에서는 수재의연금 전달체계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의연금 성격에 대한 인식 부족, 재해구호에 대한 사도의 책임부족 등을 가장 큰 문제로 꼽고 있다. 실제로 재해발생시 의연금으로 지원되는 사망자 위로금, 장기구호비 등은 사도 재해구호기금에서 선 지원되고, 사후 의연금 등으로 정산하도록 하고 있어 이재민의 경우 국민의 의연금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게 된다고 제시하고 있다.

이재은양기근(2006)에서는 미국일본독일프랑스와의 비교를 통해 한국의 재해의연금 모금 및 배분 체계의 개선방향을 살펴보고 있다. 주요 내용은 한국의 재해의연금 모금 및 배분 체계의 개선을 위해서는 재해의연금 모금 및 지원은 민간의 시민사회 부문에 의해 수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모금된 의연금에서 모집 경비 및 운영비를 공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 그리고 단기 응급지원 내용으로부터 장기적인 재해복지 차원의 지원내용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결국, 현재의 재해의연금을 통한 지원서비스가 주로 금전적이고 물질적 차원의 지원에 국한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를 보다 전문화하고 구체적이면서 장기적인 실용적 차원의 서비스 제공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시하였다.

이재은유현정(2009)에서는 의연금 지원 서비스의 두 주체인 의연금 기탁자와 이재민의 기대와 성과, 만족도에 대한 인식을 비교하여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의연금 지원의 유형을 응급의연금 지원, 재건의연금 지원, 생활의연금 지원, 복지의연금 지원으로 구분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기대성과 불일치 이론에 의

하면 의연금 기부를 통해 얻는 성과가 의연금 기부행위에 대한 기대보다 낮을 때에는 만족도가 낮게 나온다. 기탁자의 경우 실제로 전반적으로 만족도가 비교적 불만족으로 평균이 나왔으나 이재민의 경우는 성과가 기대보다 낮았음에도 불구하고 전반적 만족도가 높게 나왔다. 일반적인 시장경제 원리에 의하면 불만족하는 경우 재구매가 이루어지지 않으나 의연금의 경우 기탁자들이 전반적으로 불만족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모든 기탁자들이 재기부 의사를 밝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탁자들이 의연금기부의 기대에 대한 성과는 매우 이상적인 것으로 이에 대한 실제적인 평가는 이재민들에게서 나타나는데 기탁자들의 기대와 성과보다 이재민들이 실제로 느끼는 성과가 유의미하게 낮게 조사되었다. 이는 이재민들은 실제로 기탁자들이 느끼는 만큼 도움을 얻지 못하는 것으로 느끼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Wordon & Yitzhaki(2002)에서는 개념상으로 재해 의연금품을 받을 사람과 받지 않을 사람을 구별하는 것은 가능하다. 즉 원칙적으로 가난한 이재민 혹은 많은 피해로 고통 받는 이재민들을 구호 대상으로 선정하는 것은 가능하다. 그러나 이들 두 그룹은 전혀 같지 않다고 한다. 왜냐하면 피해의 정도는 전적으로 부(wealth)와 관련이 있기 때문이라고 제시하고 있다.

Morris(2003)에서는 재해이후 이재민으로 분류하고 정하는 것은 가능하나 모금된 재해 의연금품을 수혜자들에게 분류하여 전달하는 것이 어렵다고 지적한다. 이는 음식, 의류, 그리고 의약품으로 이루어지는 구호물품의 양이 이재민들에게 충분히 제공되기에는 제한적이기 때문이라는 가설을 1998년 Honduras에서 발생했던 허리케인 Mitch의 경험적 자료를 이용하여 검증하였다. 1998년 10월 중앙아메리카를 강타한 허리케인 Mitch는 5,657명의 사상자와 인구의 1/3에게 경제적 피해를 입혔던 대규모 재난이었다. Morris는 재해의연금품 배분(allocation)을 위한 간단한 모델을 통해 재해구호품을 받을 확률은 부(wealth)보다는 재

산적 손실(assets losses)과 관련이 있음을 입증하였다. 즉 이재민들이 살던 거처(dwelling)에 대한 피해로 고통 받는 것을 통제한다면, 제공받아야 할 의연금품의 양은 허리케인 Mitch 이전의 부(wealth)보다는 재산적 손실(assets losses)에 더 가중치를 두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Paul(2006)은 개발도상국의 재해구호의 어려움과 특히 긴급원조의 어려움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다. 즉 이재민들은 극단적인 손실을 복구하기 위해서 외부 지원이 필요한데, 특히 개발도상국의 이재민은 자국의 자원으로는 충족될 수 없다고 한다. 따라서 국제 원조 기관과 외국 및 비정부 조직(NGO)을 통한 해외 원조가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해외 재해구호나 원조의 경우, 공공 물품 분배(public distribution)에 있어 광범위한 부패(corruption)나 대대적인 불법 행위(irregularities)들로 인해 모든 이재민들에게 균등(equally)하게 배분할 수 없게 되어, 구호 물품(relief goods)의 종류와 수량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그리고 Thomas and Fritz(2006)에서는 기업 등이 구호물품을 기부하는 것보다 구호체계를 개선하는 것이 보다 시급하다고 한다. 2006년 12월 26일 남아시아에서 지진과 해일이 발생한 후에 2주 내에 Sri Lanka의 Colombo 공항에는 물품이 쌓이기 시작하였으나, 공급 창고들을 막고 수개월 동안 지급되지 않은 채로 방치되어 있었다. 이처럼 재난 발생 직후 기부보다는 재난 구호체계를 체계적으로 개선하고 이를 유지하는 것이 더욱 필요하다.

<표 2> 의연금 지원에 관한 선행연구

연구자	주요 내용
이재원 (2000)	·연구목적: 한국의 재해구호 행정체계의 개선방향 제시 ·분석대상: 한국의 재해구호 행정체계 ·주요내용: 재해발생 이후 재원과 물자가 부족하기 보다는 이를 관리하고 이재민들에게 지원하는 구조행정이 체계화되지 않아 기대되는 수준의 구조활동이 전개되지 못하고 있음
김승권 (2002)	·연구목적: 수재의연금 전달체계 개선방안 모색 ·분석대상: 한국의 수재의연금 전달체계 ·주요내용: 수재의연금 전달체계의 가장 큰 문제는 의연금 성격에 대한 인식부족 재해구호에 대한 사도의 책임부족 등
이재은 · 양기근 (2006)	·연구목적: 한국 재해의연금 모금 및 배분 체계 개선방향 제시 ·분석대상: 한국과 미국·일본·독일·프랑스의 재해의연금체계 ·주요내용: 미국·일본·독일·프랑스와의 비교를 통한 한국의 재해의연금 모금 및 배분 체계의 개선방향 제시
이재은 · 유현정 (2009)	·연구목적: 의연금 기탁자와 이재민의 기대와 성과 만족도에 대한 인식 분석 ·분석대상: 기탁자와 이재민의 의연금에 대한 만족도에 대한 기대성과불일치 수준 비교 ·주요내용: 기탁자들의 기대성과보다 이재민이 실제로 느끼는 성과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기탁자의 경우 만족도가 불만족으로 나왔으나 재기부 의사가 있는 것으로 제시됨
Wordon & Yitzhaki (2002)	·연구목적: 재해의연금 체계의 개선 방안 모색 ·분석대상: 재해의연금 체계 ·주요내용: 피해의 정도는 전적으로 부(wealth)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개념적으로 재해 의연금품을 받을 사람과 받지 않을 사람을 구별하는 것은 가능.
Morris (2003)	·연구목적: 재해의연금 모금 및 배분체계 개선방향 제시 ·분석대상: 허리케인 Mitch 사례 ·주요내용: 자연재난이후 이재민으로 분류하고 정하는 것은 가능하나 모금된 재해 의연금품을 수혜자들을 분류하여 전달하는 것이 어려움
Paul (2006)	·연구목적: 개발도상국 이재민 구호체계의 개선 ·분석대상: 개발도상국의 재해구호 및 긴급원조체계 ·주요내용: 개발도상국의 경우 재난 발생 시 해외 구호품의 분배에 있어 부패와 불법 행위 등으로 인해 이재민들에게 균등하게 배분되지 못함
Thomas & Fritz (2006)	·연구목적: 재해구호 및 의연금체계 개선방안 모색 ·분석대상: 남아시아 지진 해일 사례 ·주요내용: 재난 발생 직후 민간단체들의 많은 기부 보다는 재난 구호체계를 체계적으로 개선하고 이를 유지하는 것이 더욱 필요함

III. 의연금 지원 제도에 관한 실증분석

1. 조사 설계

본 조사는 의연금 지원 제도에 대한 공무원, 기탁자 및 일반 시민, 이재민 등의 의견을 수집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의연금 지원 제도의 개선 방안에 필요한 구체적이고 실증적인 자료의 획득에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의연금 지원 제도와 관련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구체적인 조사 내용은 의연금 사용과 지급범위 및 기준에 대한 인식으로 구성하였다. 조사 대상은 의연금 담당 공무원, 의연금 기탁자 및 일반 시민, 재난피해지역 주민 등으로 구성하였다. 설문조사는 규격화된 질문지를 이용한 설문조사 방법을 활용하였으며, 우편 및 현장 조사 방법을 활용하였으며, 조사기간은 2009년 3월 27일부터 5월 10일까지이다.

<표 3> 인구사회학적 특성

구분		이재민		일반시민		구분		공무원		
		빈도	%	빈도	%			빈도	%	
전체		162	100.0	235	100.0	전체		156	100.0	
성별	남	94	58.0	111	47.2	성별	남	104	66.7	
	여	68	42.0	124	52.8		여	52	33.3	
연령	20대	3	1.9	91	38.7	연령	20대	13	8.3	
	30대	42	25.9	64	27.2		30대	48	30.8	
	40대	34	21.0	55	23.4		40대	63	40.4	
	50대	61	37.7	22	9.4		50대	31	19.9	
	60대이상	22	13.6	3	1.3		60대이상	1	0.6	
학력	초졸이하	12	7.4	1	0.4	학력	고졸이하	16	10.3	
	중졸	46	28.4	2	0.9		대졸	118	75.6	
	고졸	78	48.1	51	21.7		석사	21	13.5	
	대학중퇴이상	26	16.0	181	77.0		박사	1	0.6	
연소득	3000만원이하	71	43.8	159	67.7	연소득	3000만원이하	43	27.6	
	3000만원-4000만원	64	39.5	26	11.1		3000만원-4000만원	58	37.2	
	4000만원-5000만원	18	11.1	24	10.2		4000만원-5000만원	39	25.0	
	5000만원-6000만원	7	4.3	13	5.5		5000만원-6000만원	12	7.7	
	6000만원이상	2	1.2	13	5.5		6000만원이상	4	2.6	
세대주와 의관계	세대주본인	86	53.1	99	42.1	직급	8-9급	46	29.5	
	배우자	48	29.6	43	18.3		6-7급	92	59.0	
	부모	9	5.6	0	0.0		5급	14	9.0	
	형제지매	3	1.9	1	0.4		4급이상	4	2.6	
	자녀	14	8.6	92	39.1	근무년수	1-2년	13	8.3	
	기타	2	1.2	0	0.0		3-5년	26	16.7	
					6-9년		12	7.7		
직업	회사원	16	9.9	79	33.6	10년이상	105	67.3		
	공무원	6	3.7	38	16.2		재해구호업무 근무년수	1년미만	89	57.1
	자영업	27	16.7	14	6.0			1-2년	58	37.2
	농축수산업	64	39.5	0	0.0	3-4년		4	2.6	
	전문직	4	2.5	28	11.9	5년이상		5	3.2	
	주부	25	15.4	14	6.0					
	학생	0	0.0	46	19.6					
	단순노무	9	5.6	4	1.7					
	무직	5	3.1	4	1.7					
	기타	6	3.7	8	3.4					

2. 의연금 지원제도에 관한 실증분석

1) 의연금 지원에 대한 이재민의 만족도

이재민을 대상으로 의연금 지원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해 본 결과, 생계안정 만족도는 약간 도움이 되었

다가 34.6%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보통이다가 28.4%로 나타났다. 이를 생계안정 만족도를 지수화 한 결과 3.32로 나타났다. 정신적 안정 만족도는 약간 도움이 된다가 38.3%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보

통이다가 34.6%로 나타났다. 정신적 안정 만족도를 지수화 한 결과 3.34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일상생활 복귀 만족도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가 28.4%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약간 도움이 된다가 27.2%로 나타났다. 일상생활 복귀 만족도를 지수화 한 결과 3.12로 나타났다. 의연금 지원에 대한 이재민 만족도를 분석해 본 결과 일상생활 복귀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향후 이재민들이 빠른 시일 내에 일상생활로 복귀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 4> 의연금 지원에 대한 이재민의 만족도

문항	구분	전혀 도움 되지 않음	별로 도움 되지 않음	보통 이다	약간 도움 됨	매우 도움 됨	전체	만족 도
생계 안정	빈도	10	28	46	56	22	162	3.32
	%	6.2%	17.3%	28.4%	34.6%	13.6%	100.0%	
정신 적 안정	빈도	5	25	56	62	14	162	3.34
	%	3.1%	15.4%	34.6%	38.3%	8.6%	100.0%	
일상 생활 복귀	빈도	10	46	41	44	21	162	3.12
	%	6.2%	28.4%	25.3%	27.2%	13.0%	100.0%	

2) 의연금에 대한 일반시민의 인식도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의연금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 인식도를 조사한 결과 잘 모른다가 49.4%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전혀 알지 못한다가 17.4%로 나타났다. 의연금에 대한 인식도를 지수화 한 결과 2.37로 기탁자와 일반시민의 의연금 인식도가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향후 기탁자와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재해의연금에 대한 인식도를 높이기 위한 홍보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 5> 일반 시민의 의연금에 대한 인식

구분	전혀 알지 못한 다	잘모 른다	보통 이다	약간 알고 있다	아주 잘 알고 있다	전체	인식 도
빈도	41	116	33	39	6	235	2.37
%	17.4%	49.4%	14.0%	16.6%	2.6%	100.0%	

3) 일반시민과 이재민의 의연금 사용 용도에 대한 인식도

일반시민과 이재민을 대상으로 의연금의 사용 용도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의연금을 이재민을 위한 긴급자금지원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 일반시민과 이재민 모두 매우필요하다(일반시민 64.7%, 이재민 46.9%)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약간 필요하다(일반시민 26.4%, 이재민 32.1%)로 나타났다. 의연금을 이재민을 위한 긴급자금지원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지수화 한 결과 일반시민은 4.55, 이재민은 4.15로 모두 높게 나타났다. 일반시민과 이재민 간 긴급자금지원으로 사용에 대한 평균에 차이가 있는 지 살펴보기 위해 t-test를 실시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p<.001)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재민을 위한 긴급자금지원으로 의연금을 사용에 대한 필요성을 일반시민들이 이재민들 보다 더 높게 인지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둘째, 의연금을 이재민을 위한 중장기적 복구 사업 지원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 일반시민은 약간 필요하다가 39.1%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매우 필요하다가 37.4%로 나타났다. 이재민의 경우 매우 필요하다가 46.9%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약간 필요하다가 32.1%로 나타났다. 이를 지수화 한 결과 일반시민은 4.10, 이재민은 4.20으로 모두 높게 나타났다.

셋째, 의연금을 이재민 중 소외계층 추가 지원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 일반시민과 이재민 모두 매우 필요하다(일반시민 58.3%, 이재민 43.2%)가

장 많았으며, 다음은 약간 필요하다(일반시민 31.1%, 이재민 35.2%)로 나타났다. 이를 지수화 한 결과 일반시민은 4.47, 이재민은 4.14로 모두 높게 나타났다. 일반시민과 이재민 사이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01$). 이는 의연금을 소외계층 추가 지원 용도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필요성을 일반 시민이 이재민보다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의연금을 이재민을 위한 봉사활동단체 지원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 일반시민은 매우 필요하다와 약간 필요하다가 모두 35.3%로 가장 많았으며, 이재민은 매우 필요하다가 37.0%, 약간 필요하

다가 30.2%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일반시민과 이재민을 대상으로 의연금의 사용 용도에 대해 조사해본 결과, 일반시민은 이재민을 위한 긴급자금지원과 이재민 중 소외계층 추가 지원을 위해 의연금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필요성이 높게 나타났으며, 이재민의 경우는 이재민을 위한 중장기적 복구 사업 지원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였다. 다음으로는 이재민을 위한 긴급 자금지원, 이재민 중 소외계층 추가지원으로 나타났다.

<표 6> 일반시민과 이재민의 의연금 사용 용도에 대한 인식 분석

문항	집단	구분	전혀필요하지않다	별로필요하지않다	보통이다	약간필요하다	매우필요하다	전체
이재민을 위한 긴급자금 지원	일반시민	빈도	0	2	19	62	152	235
		%	0.0%	0.9%	8.1%	26.4%	64.7%	100.0%
	이재민	빈도	3	11	20	52	76	162
		%	1.9%	6.8%	12.3%	32.1%	46.9%	100.0%
이재민을 위한 중장기적 복구사업 지원	일반시민	빈도	1	8	46	92	88	235
		%	0.4%	3.4%	19.6%	39.1%	37.4%	100.0%
	이재민	빈도	0	10	24	52	76	162
		%	0.0%	6.2%	14.8%	32.1%	46.9%	100.0%
이재민 중에서 소외계층 추가 지원	일반시민	빈도	0	1	24	73	137	235
		%	0.0%	0.4%	10.2%	31.1%	58.3%	100.0%
	이재민	빈도	4	4	27	57	70	162
		%	2.5%	2.5%	16.7%	35.2%	43.2%	100.0%
이재민을 위한 봉사활동단체 지원	일반시민	빈도	8	10	51	83	83	235
		%	3.4%	4.3%	21.7%	35.3%	35.3%	100.0%
	이재민	빈도	1	14	38	49	60	162
		%	0.6%	8.6%	23.5%	30.2%	37.0%	100.0%

4) 의연금의 사용용도에 대한 공무원의 인식도

공무원을 대상으로 의연금의 사용 용도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의연금을 현재 피해를 입은 이재민을 위한 응급 의연금(위로금 성격)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것에 매우 필요하다가 54.5%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약간 필요하다가 26.9%로 나타났다. 의연금을 응급 의연금(위로금 성격)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것을 지수화한 결과 4.28로 높게 나타났다.

둘째, 의연금을 현재 피해를 입은 이재민을 위한

중장기적 재건의연금(지원사업성격) 서비스로 지원해야 한다는 것에 약간 필요하다가 39.7%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매우 필요하다가 34.0%로 나타났다. 의연금을 중장기적 재건의연금(지원사업성격) 서비스로 지원해야 한다는 것을 지수화 한 결과 3.94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셋째, 의연금을 과거 피해를 입은 이재민 중에서 생활이 어려운 이재민에게 생계유지차원 생활 의연금(위로금 차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것에 약간 필요하다가 27.6%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보

통이다가 23.7%로 나타났다. 의연금을 생계유지차원 생활 의연금(위로금 차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하다는 것을 지수화 한 결과 3.39로 나타났다.

넷째, 의연금을 과거 피해를 입은 이재민 중에서 생활이 어려운 이재민에게 중장기적 복지의연금(복지사업성격) 서비스로 지원해야 하다는 것에 대해 약간 필요하다가 27.6%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보통이

다가 23.7%로 나타났다. 의연금을 중장기적 복지의연금(복지사업성격) 서비스로 지원해야 하다는 것을 지수화 한 결과 3.33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공무원을 대상으로 의연금의 사용 용도에 대해 조사해본 결과, 응급 의연금(위로금 성격) 현금 지급으로 의연금을 사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7> 현금지급에 대한 공무원 인식분석

문항	구분	전혀필요하지 않다	별로필요하지 않다	보통이다	약간필요하다	매우필요하다	전체	Mean
응급의연금(위로금 성격) 현금 지원	빈도	3	7	19	42	85	156	4.28
	%	1.9%	4.5%	12.2%	26.9%	54.5%	100.0%	
중장기적 재건의연금 서비스 지원	빈도	7	8	26	62	53	156	3.94
	%	4.5%	5.1%	16.7%	39.7%	34.0%	100.0%	
생계유지차원 생활 의연금 현금 지원	빈도	8	34	37	43	34	156	3.39
	%	5.1%	21.8%	23.7%	27.6%	21.8%	100.0%	
중장기적 복지의연금 서비스 지원	빈도	13	27	46	35	35	156	3.33
	%	8.3%	17.3%	29.5%	22.4%	22.4%	100.0%	
소외계층 사후 추가 지원	빈도	8	19	20	49	60	156	3.86
	%	5.1%	12.2%	12.8%	31.4%	38.5%	100.0%	
정상생활 복귀 및 삶의 의욕 정진을 위한 서비스 지원	빈도	4	9	26	60	57	156	4.01
	%	2.6%	5.8%	16.7%	38.5%	36.5%	100.0%	

다섯째, 의연금을 이재민 중에서도 중증장애인가정, 독거노인가정, 조손가정, 소년소녀가장 등 소외계층에 대한 사후 추가지원 서비스로 사용되는 것에 대해 조사한 결과, 매우 필요하다가 38.5%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약간 필요하다가 31.4%로 나타났다. 이를 지수화 한 결과 3.86으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의연금을 정상생활로의 복귀를 돕고 삶의 의욕을 불러 일으키기 위해 재난 피해지역 이재민에게 농촌봉사, 의료지원봉사, 상담서비스 등의 서비스 지원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조사한 결과, 약간 필요하다가 38.5%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매우 필요하다가 36.5%로 나타났다. 이를 지수화 한 결과 4.01로 높게 나타났다.

이와 같이 공무원을 대상으로 의연금 지원 서비스에 대해 조사해본 결과, 소외계층 사후 추가 지원과 정상생활 복귀 및 삶의 의욕 정진을 위한 서비스 지원 모두 높게 나타나 향후 해당 서비스에 대한 지원 정책 방안 모색이 필요한 것이라 판단된다.

5) 소상공인 등의 생산 시설에 지원 방법

상공인이나 농가·어가·임가·염생산가의 생산시설 피해에 대한 지원 방법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유재산은 스스로 지켜야하므로 보험가입 등으로 사전에 예방해야 한다는 대해서 일반시민은 약간 그렇다가 41.3%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매우 그렇다가 24.7%로 나타났다. 이재민의 경우는 약

간 그렇다가 40.7%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보통이다가 23.5%로 나타났다. 공무원의 경우는 매우 그렇다가 39.7%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약간 그렇다가 37.2%로 나타났다. 사유재산은 스스로 지켜야하므로 보험가입 등으로 사전에 예방해야 하는 것에 대한 일반시민과 이재민의 의견을 지수화 한 결과 일반 시민은 3.78, 이재민은 3.40, 공무원은 4.09로 나타났다. 따라서 사유재산은 보험가입을 통해 스스로 지켜 사전에 예방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 공무원이 가장 높게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일반시민, 이재민 순이 있었다. 세 집단 사이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01$). 이는 보험가입은 사유재산에 피해에 대한 책임성과 깊은 관련이 있으므로 공무원과 일반시민, 이재민 간 인식에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재해로 인한 소상공인에 대한 의연금 지급은 재산피해를 입은 정도에 따라 지원 기준을 정하여서 지급되어야 함에도 현재는 침수 신고만 하면 100만원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사실상 최소한의 확인절차도 없이 단순 신고 접수에 의한 의연금 지급으로 형평성이 고려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며, 풍수해보험 같은 경우가 농민들에게만 적용되듯이, 소상공인은 화재보험 등으로 어느 정도의 재산피해에 대한 복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오히려 보험으로 대비를 유도하는 한편, 명확한 지급 기준에 대한 마련이 필요하다(A군 담당공무원, 2009. 7. 24, 면접조사).

둘째, 정부가 피해보상금 등의 형태로 지원해야 한가에 대해서 일반시민은 약간 그렇다가 45.1%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보통이다가 30.6%로 나타났다. 이재민의 경우는 약간 그렇다가 45.7%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매우 그렇다가 25.9%로 나타났다. 공무원의 경우는 보통이다가 27.6%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약간 그렇다가 25.6%로 나타났다. 정부가 피해보상금 등의 형태로 지원해야 한가에 대한 일반 시민과 이재민, 공무원의 의견을 지수화 한 결과 일반

시민은 3.71, 이재민은 3.93, 공무원은 3.11로 나타났다. 세 집단 간의 평균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일원배치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01$). 이는 일반시민과 이재민은 공무원에 비해 정부가 피해보상금 등의 형태로 지원해야 하는 필요성에 대해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이라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 보상 지원에 대한 공무원 집단과 일반시민이재민 집단의 견해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생산시설 피해 지원은 위로금 성격이 아니므로 형평성을 고려한 지원이 바람직하다는에 대해 일반 시민은 약간 그렇다가 40.0%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매우 그렇다가 28.9%로 나타났다. 이재민의 경우는 약간 그렇다가 42.6%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보통이다가 27.2%로 나타났다. 이를 지수화 한 결과 일반시민은 3.91, 이재민은 3.46으로 나타났다. 두 집단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01$). 따라서 일반시민이 이재민보다 생산시설 피해지원은 위로금성격이 아니므로 형평성을 고려하여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인지하고 있는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형평성에는 문제가 있으나 현행대로 의연금에서 위로금을 지원해야 한가에 대해서 일반시민은 보통이다가 47.2%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약간 그렇다와 별로 그렇지 않다가 각각 21.7%로 나타났다. 이재민의 경우는 보통이다가 39.5%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약간 그렇다가 22.8%로 나타났다. 공무원의 경우 별로 그렇지 않다가 32.7%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보통이다가 25.0%로 나타났다. 이를 지수화 한 결과 일반시민은 3.00, 이재민은 3.32, 공무원은 2.76으로 나타났다. 세 집단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01$). 이는 공무원과 일반시민이 이재민에 비해 현행대로 의연금에서 위로금을 지원하는 것에 대한 견해 수준

이 낮은 것이므로 현행 의연금 지원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식수준이 높은 것이라 해석할 수 있다.

<표 8> 소상공인 등의 생산시설 지원에 대한 인식 분석

문항	집단	구분	전혀그렇지않다	별로그렇지않다	보통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보험가입 등으로 사전에 스스로 예방	일반시민	빈도	6	17	57	97	58	235
		%	2.6%	7.2%	24.3%	41.3%	24.7%	100.0%
	이재민	빈도	15	19	38	66	24	162
		%	9.3%	11.7%	23.5%	40.7%	14.8%	100.0%
	공무원	빈도	1	10	25	58	62	156
		%	0.6%	6.4%	16.0%	37.2%	39.7%	100.0%
정부가 피해보상금 형태로 지원	일반시민	빈도	4	12	72	106	41	235
		%	1.7%	5.1%	30.6%	45.1%	17.4%	100.0%
	이재민	빈도	0	8	38	74	42	162
		%	0.0%	4.9%	23.5%	45.7%	25.9%	100.0%
	공무원	빈도	16	35	43	40	22	156
		%	10.3%	22.4%	27.6%	25.6%	14.1%	100.0%
생산시설 피해지원은 위로금 성격이 아니므로 형평성을 고려한 지원	일반시민	빈도	1	13	59	94	68	235
		%	0.4%	5.5%	25.1%	40.0%	28.9%	100.0%
	이재민	빈도	2	28	44	69	19	162
		%	1.2%	17.3%	27.2%	42.6%	11.7%	100.0%
현행대로 의연금에서 위로금 성격으로 지원	일반시민	빈도	11	51	111	51	11	235
		%	4.7%	21.7%	47.2%	21.7%	4.7%	100.0%
	이재민	빈도	2	33	64	37	26	162
		%	1.2%	20.4%	39.5%	22.8%	16.0%	100.0%
공무원	빈도	21	51	39	34	11	156	
	%	13.5%	32.7%	25.0%	21.8%	7.1%	100.0%	

6) 이재민 서비스 지원을 위한 각종 관련 단체와의 연계 필요성

이재민을 위한 현금지원 외에 의료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사회단체나 자원봉사단체등과 연계하여 이재민에게 서비스를 지원할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일반시민은 매우 필요하다가 36.6%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약간 필요하다가 34.8%로 나타났다. 이재민은 매우 필요하다가 29.0%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보통이다가 27.8%로 나타났다. 공무원은 매우 필요하다가 36.5%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약간 필요하다가 30.1%로 나타났다. 실제 현장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의 경우, 의연금품 전달시 도로 유실이 발생이나 의연품의 유효기간이 짧은 것이나 부피가 큰 것들로 인해 한정된 구호차량으로 운행하다보니 차량지원이나 인력이 많지 않아 어려움이 있다(A군 담당공무원, 2009. 7. 24, 면접조사).

이재민을 위한 현금지원 외에 의료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사회단체나 자원봉사단체등과 연계하여 이재민에게 서비스를 지원할 필요성에 대한 각 집단 의견을 지수화 한 결과 일반시민은 3.95, 이재민은 3.47, 공무원은 3.79로 나타났다. 세 집단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01). 따라서 공무원과 일반시민이 이재민에 비해 현금지원 이외의 서비스를 사회단체나 자원봉사단체 등과 연계하여 지원하는 것에 대한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

<표 9> 이재민 서비스지원을 위한 관련단체와의 연계 필요성

집단	구분	전혀 필요하지 않다	별로 필요하지 않다	보통이다	약간 필요하다	매우 필요하다	전체
일반 시민	빈도	9	13	45	82	86	235
	%	3.8%	5.5%	19.1%	34.9%	36.6%	100.0%
이재민	빈도	2	41	45	27	47	162
	%	1.2%	25.3%	27.8%	16.7%	29.0%	100.0%
공무원	빈도	10	18	24	47	57	156
	%	6.4%	11.5%	15.4%	30.1%	36.5%	100.0%

7) 의연금 지원 방식의 다양화에 대한 인식

의연금 지원 방식에 대해 일반시민, 이재민, 공무원의 의견을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의연금을 전액 현금으로 지원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일반시민은 보통이다가 39.6%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약간 필요하다가 26.8%로 나타났다. 이재민은 매우 필요하다가 41.4%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약간 필요하다가 35.2%로 나타났다. 공무원은 보통이다가 25.6%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매우 필요하다가 23.1%로 나타났다. 의연금을 전액 현금으로 지원할 필요성에 대한 각 집단 의견을 지수화 한 결과 일반시민은 3.46, 이재민은 4.02, 공무원은 3.23으로 나타났다. 이들 사이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01$). 따라서 이재민은 일반시민과 공무원에 비해 전액 현금으로 지원하는 것에 대한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

둘째, 의연금을 현금과 물품으로 지원하는 것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일반시민은 약간 필요하다가 46.0%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매우 필요하다가 32.3%로 나타났다. 이재민의 경우는 역시 약간 필요하다가 37.7%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매우 필요하다가 37.0%로 나타났다. 공무원은 약간 필요하다가 37.2%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보통이다가 25.0%로 나타났다. 의연금을 현금과 물품으로 지원하는 것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각 집단 의견을 지수화 한 결과 일반시민은 4.07, 이재민은 4.06, 공무원은 3.42로 나타났다. 세 집단 간에는 통

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p < .001$). 따라서 이재민과 일반시민은 공무원에 비해 의연금을 현금과 물품으로 지원하는 것에 대한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

셋째, 의연금을 현금과 복구서비스로 지원하는 것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일반시민은 매우 필요하다가 43.4%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약간 필요하다가 40.0%로 나타났다. 이재민의 경우는 역시 약간 필요하다가 38.3%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매우 필요하다가 34.6%로 나타났다. 공무원은 약간 필요하다가 39.1%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보통이다가 29.5%로 나타났다. 의연금을 현금과 복구서비스로 지원하는 것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각 집단 의견을 지수화 한 결과 일반시민은 4.24, 이재민은 4.02, 공무원은 3.40으로 나타났다.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재민과 일반시민은 공무원에 비해 의연금을 현금과 복구서비스로 지원하는 것에 대한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

넷째, 의연금을 의료심리상담 등 별도 서비스로 지원하는 것에 대한 필요성을 조사한 결과, 일반시민은 약간 필요하다가 47.7%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매우 필요하다가 26.4%로 나타났다. 이재민의 경우는 역시 약간 필요하다가 39.5%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보통이다가 28.4%로 나타났다. 공무원은 약간 필요하다가 39.7%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보통이다가 25.6%로 나타났다. 의연금을 의료심리상담 등 별도 서비스로 지원하는 것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각 집단 의견을 지수화 한 결과 일반시민은 3.99, 이재민은 3.71, 공무원은 3.35로 나타났다. 세 집단 간의 평균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의연금을 의료심리상담 등 별도 서비스로 지원하는 것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일반시민이 가장 높게 인식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이재민, 공무원 순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의연금을 소외계층에 대한 서비스 제공 단체를 지원하는 것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일반시민은 매우 필요하다가 41.7%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약간 필요하다가 40.0%로 나타났다. 이재민의 경우는 약간 필요하다가 38.3%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매우 필요하다가 29.0%로 나타났다. 공무원은 약간 필요하다가 34.0%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매우 필요하다가 31.4%로 나타났다. 의연금을 소외계층에 대한 서비스 제공 단체를 지원하는 것에 대한 필요성에 각 집단 의견을 지수화 한 결과 일반시민은 4.21, 이재민은 3.85, 공무원은 3.74로 나타났다. 세 집단 간의 평균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01). 따라서 의연금을 소외계층에 대한 서비스 제공 단체를 지원하는 것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인식 수준이 일반시민이 이재민과 공무원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외계층 서비스 제공 단체 지원	일반 시민	빈도	0	5	38	94	98	235
		%	0.0%	2.1%	16.2%	40.0%	41.7%	100.0%
	이재민	빈도	4	10	39	62	47	162
		%	2.5%	6.2%	24.1%	38.3%	29.0%	100.0%
	공무원	빈도	10	15	29	53	49	156
		%	6.4%	9.6%	18.6%	34.0%	31.4%	100.0%
현금과 봉사 서비스 지원	공무원	빈도	12	23	48	54	19	156
		%	7.7%	14.7%	30.8%	34.6%	12.2%	100.0%

마지막으로, 의연금을 현금과 봉사서비스로 지원하는 것에 대한 공무원의 의견을 조사한 결과 약간 그렇다가 34.6%로 가장 많았으며 보통이다가 30.8%로 높게 나타났다. 의연금을 현금과 봉사서비스로 지원하는 것에 대한 공무원의 의견을 지수화 한 결과 3.29로 나타났다.

8) 일부 소규모 지역 재난 발생 시 의연금 지원

일부 소규모 지역 재난 발생 시 의연금 지원 방안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기존 의연금 적립금에서 지급하는 방안에 대한 방안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일반시민은 약간 그렇다가 43.0%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보통이다가 32.3%로 나타났다. 이재민은 보통이다가 48.8%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약간 그렇다가 27.8%로 나타났다. 공무원은 매우 그렇다가 38.5%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약간 그렇다가 37.8%로 나타났다. 이를 지수화한 결과 일반시민은 3.71, 이재민은 3.36, 공무원은 4.04로 나타났으며, 세 집단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01). 따라서 기존 의연금 적립금에서 지급하는 방안에 대해 공무원이 가장 긍정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었으며 다음으로 일반시민, 이재민 순이었다.

둘째, 그 때 그 때 별도로 모금하여 지급하는 방안에 대한 방안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일반시민은 보통이다가 39.1%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약간 그렇다가 29.8%로 나타났다. 이재민은 약간 그렇다가 49.4%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보통이다가 30.9%

<표 10> 의연금 지원방식 다양화에 대한 인식

문항	집단	구분	전혀필요하지 않다	별로필요하지 않다	보통이다	약간필요하다	매우필요하다	전체
전액 현금 지원	일반 시민	빈도	5	31	93	63	43	235
		%	2.1%	13.2%	39.6%	26.8%	18.3%	100.0%
	이재민	빈도	11	4	23	57	67	162
		%	6.8%	2.5%	14.2%	35.2%	41.4%	100.0%
	공무원	빈도	18	31	40	31	36	156
		%	11.5%	19.9%	25.6%	19.9%	23.1%	100.0%
현금과 물품을 함께 지원	일반 시민	빈도	2	4	45	108	76	235
		%	0.9%	1.7%	19.1%	46.0%	32.3%	100.0%
	이재민	빈도	0	10	31	61	60	162
		%	0.0%	6.2%	19.1%	37.7%	37.0%	100.0%
	공무원	빈도	11	22	39	58	26	156
		%	7.1%	14.1%	25.0%	37.2%	16.7%	100.0%
현금과 복구서비스 지원	일반 시민	빈도	2	3	34	94	102	235
		%	0.9%	1.3%	14.5%	40.0%	43.4%	100.0%
	이재민	빈도	0	8	36	62	56	162
		%	0.0%	4.9%	22.2%	38.3%	34.6%	100.0%
	공무원	빈도	12	16	46	61	21	156
		%	7.7%	10.3%	29.5%	39.1%	13.5%	100.0%
의료심리상담 서비스 지원	일반 시민	빈도	0	4	57	112	62	235
		%	0.0%	1.7%	24.3%	47.7%	26.4%	100.0%
	이재민	빈도	2	15	46	64	35	162
		%	1.2%	9.3%	28.4%	39.5%	21.6%	100.0%
	공무원	빈도	14	20	40	62	20	156
		%	9.0%	12.8%	25.6%	39.7%	12.8%	100.0%

로 나타났다. 공무원은 별로 그렇지 않다가 39.1%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보통이다가 28.2%로 나타났다. 지수화한 결과는 일반시민 3.07, 이재민 3.63, 공무원 2.42로 나타났으며, 이들 사이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01$). 따라서 그때 그때 별도로 모금하여 지급하는 방안에 대해 이재민이 가장 긍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었으며 다음으로 일반시민, 공무원 순이었다.

셋째, 별도 모금없이 부족금액을 정부 구호금으로 지급하는 방안에 대한 방안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일반시민은 보통이다가 34.9%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약간 그렇다가 31.1%로 나타났다. 이재민은 약간 그렇다가 39.5%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보통이다가 26.5%로 나타났다. 공무원은 보통이다가 29.5%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별로 그렇지 않다가 24.4%로 나타났다. 지수화한 결과 일반시민은 3.41, 이재민은 3.66, 공무원은 2.87로 나타났고 이들 사이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p < .001$). 따라서 별도 모금 없이 부족금액을 정부 구호금으로 지급하는 방안에 대해 일반시민과 이재민은 비교적 긍정적인 반면 공무원은 다소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 이는 공무원이 정부에 소속되어 있는 이해관계자이므로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타난 것이라 판단된다.

넷째, 소규모 재난은 의연금 지급을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조사한 결과 일반시민은 보통이다가 30.2%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별로 그렇지 않다가 29.8%로 나타났다. 이재민은 보통이다가 29.6%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전혀 그렇지 않다가 27.2%로 나타났다. 공무원은 보통이다가 28.8%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별로 그렇지 않다가 22.4%로 나타났다. 이를 지수화한 결과 일반시민은 2.26, 이재민은 2.52, 공무원은 2.89로 나타났으며, 세 집단 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01$). 따라서 소규모 재난시 의연금 지급을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에 대해 일반시민과 이재민, 공무원 모두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었으며 일반시민과 이재민이 공무원에 비해 부정적 견해의 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1> 소규모 지역 재난 발생 시 의연금 지원 방안

문항	집단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기존 의연금 적립금에서 지급	일반 시민	빈도	3	13	76	101	42	235
		%	1.3%	5.5%	32.3%	43.0%	17.9%	100.0%
	이재민	빈도	5	14	79	45	19	162
		%	3.1%	8.6%	48.8%	27.8%	11.7%	100.0%
	공무원	빈도	4	9	24	59	60	156
		%	2.6%	5.8%	15.4%	37.8%	38.5%	100.0%
별도 모금을 통한 지급	일반 시민	빈도	16	45	92	70	12	235
		%	6.8%	19.1%	39.1%	29.8%	5.1%	100.0%
	이재민	빈도	0	14	50	80	18	162
		%	0.0%	8.6%	30.9%	49.4%	11.1%	100.0%
	공무원	빈도	29	61	44	16	6	156
		%	18.6%	39.1%	28.2%	10.3%	3.8%	100.0%
부족금액 정부 구호금으로 지급	일반 시민	빈도	10	32	82	73	38	235
		%	4.3%	13.6%	34.9%	31.1%	16.2%	100.0%
	이재민	빈도	4	17	43	64	34	162
		%	2.5%	10.5%	26.5%	39.5%	21.0%	100.0%
	공무원	빈도	23	38	46	34	15	156
		%	14.7%	24.4%	29.5%	21.8%	9.6%	100.0%
소규모 재난시 의연금 지급 않음	일반 시민	빈도	67	70	71	24	3	235
		%	28.5%	29.8%	30.2%	10.2%	1.3%	100.0%
	이재민	빈도	44	36	48	21	13	162
		%	27.2%	22.2%	29.6%	13.0%	8.0%	100.0%
	공무원	빈도	26	35	45	30	20	156
		%	16.7%	22.4%	28.8%	19.2%	12.8%	100.0%

3. 소결론

의연금 지원 체계에 관한 실증분석 결과 일반시민과 이재민, 공무원들 간의 의연금 지원체계 선호도에 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시민과 이재민, 공무원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현행 의연금 지원 정책에 대해 회의적이다. 현행대로 위로금의 형태로 의연금을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 일반시민, 이재민, 공무원 모두 별로 그렇지 않

다라고 응답하였다. 이는 현행 의연금 지원 정책에 대해 회의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이재민을 대상으로 의연금이 일상생활로 복구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조사한 결과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대한 의견이 많았다. 또한, 재해복구는 이재민이 빠른 시일 내에 재해 상황으로 부터 벗어나 일상생활로 복구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라는 점에서 현행의연금 지원 제도를 이재민의 삶의 복지 증진을 위한 방향으로 수정·보완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실무 담당 공무원과의 인터뷰에서도 신속한 피해복구와 이재민 생활의 불편을 생각한다면 최초로 피해가 발생하고 7일 이내에는 1차적 의연금품이 전달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후에 피해조사 절차를 거쳐서 정부지원금과 같이 지원하더라도 당장 필요한 물품지원이나 일부의 현금 지원은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지는 것이 실질적으로 이재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A군 공무원, 2009. 07.24).

둘째, 이재민을 대상으로 의연금 인식도 조사 결과 많은 이재민들이 잘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연금은 일반시민들이 사회봉사의 차원에서 개인적으로 모금된 것이므로 이재민들이 의연금 지급에 대한 목적과 취지를 인식한다면 의연금 지급액과 별개로 정신적 또는 심리적으로 많은 위안이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복구가 위급한 상황이므로 이를 인식하는 데에는 다소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재해 기간 중에 의연금에 대해서 인식시키는 노력은 재해 복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재민에게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평소 재해기간이 아니더라도 전국민을 대상으로 의연금의 목적과 취지에 대해 홍보하여 향후 재해를 경험한 경우 자연스럽게 의연금이 어떠한 경로로 이재민에게 보급되는지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공장이나 사업체를 비롯하여 일반 가정에서도 재해에 대비하여 사전에 보험의 형태로 재해복구 비용을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매년 폭우·폭설, 홍수 등의 피해는 일정지역에 집중되는 경우가 많다.

재해를 경험하고 난 후 일상생활로 복구하는 데는 경제적으로 큰 규모의 지출이 따르기 때문에 일부 이재민은 재해 전의 삶으로 돌아가기 힘든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따라서 특히 공장이나 사업체는 재해복구를 대비한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여 재해 상황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넷째, 이재민을 대상으로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의연금이 어떠한 용도로 사용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해 조사한 결과 긴급자금지원이나 봉사단체 지원을 매우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재민은 개개인의 지원도 필요로 하고 있었지만 소외계층 추가지원 역시 매우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다섯째, 일반시민, 이재민, 공무원을 대상으로 의연금 지원방안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전액현금지원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그러나 현금과 함께 물품이나, 복구 서비스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전액 현금지원과 비슷한 수준으로 많았다. 그러나 심리·의료상담서비스 지원에 대해서는 이재민과 일반시민의 의견은 필요하다가 많았으나 공무원은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또한 현금과 봉사서비스를 함께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도 이재민과 일반시민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으나 공무원은 필요하다는 의견이 비교적 낮게 나타나 일반시민과 이재민, 공무원간에 의연금 지급 방안에 대한 시각에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재해를 당한 이재민이 일상생활로 복구하는 것이 최우선시 되어야 하며 피해지역주민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을 지원해 주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의연금 지급 방안은 이재민의 의견을 최우선으로 수렴해야 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의연금의 대부분을 현금으로 지급하되 재해복구에 필요한 물품이나, 복구서비스, 심리·의료상담서비스도 동시 지원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여섯째, 의연금 지급방안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피해액에 따라 이재민과 일반시민은 차등 지원하는 방안과 가족 수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방안에 대

해 긍정적이었으며, 공무원은 피해정도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방안과 피해정도에 따라 균등 지원하는 방안을 동일한 수준에서 긍정적으로 응답하였다. 또한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소외계층에 대한 추가지급 방안에 대해서도 일반시민, 이주민 모두 긍정적으로 응답하고 있었다. 따라서 재해규모와, 가족원수, 소외계층유무를 의연금 지급 기준으로 활용하여 의연금 지급 체계를 수립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일곱째, 소규모 재난이 발생할 경우 의연금을 계속해서 모금할 경우 국민들은 의연금모금 간격이 좁아지므로 의연금을 모금액이 저조할 수 있다. 따라서 소규모 재난에 대한 의연금 대처 방안을 조사한 결과 기존의연금 적립금에서 지급하는 방안에 대해 일반시민, 이주민, 공무원 모두 긍정적으로 응답했으며, 부족금액을 정부 구호금으로 지급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일반시민과 이주민은 긍정적이었으나 공무원은 비교적 긍정적인 의견이 낮게 나타났다. 따라서 소규모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 기존의 의연금 적립금에서 충당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그러나 소규모 재난이 자주 발생할 경우 의연금 적립금이 현저히 부족할 경우 의연금 적립금액이 고갈 될 수 있으므로 최소 적립 유지금액(적립 하한선)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최소 적립 유지금액을 넘어서 지급액에 대해서는 정부 구호금으로 의연금을 지급하거나 새로이 의연금을 모금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해야 할 것이다.

여덟째, 현행 의연금품 관리운영 규정은 재해로 인한 생계지원 대상피해에 대한 의연금으로서 소상공인에게 세대당 최대 100만원을 지급함을 규정하고 있다. 생계지원 대상피해에 대한 의연금 지급을 위해서는 피해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 현행 자연재난 피해조사 지침은 농가·어가·임가·염생산가 등에 대하여 매우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에 비해, 소상공인에 대한 피해조사는 주택 침수 기준과 피해조사 관련 담당공무원의 현장조사로 이루어진다. 특히, 현장조사에서는 제품의 완제품이나 재료를 기준

으로 피해액을 산정한다. 그러나 피해대상 중에서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설비나 기계 등은 피해액 산정에 전문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담당공무원이 정확한 피해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다(B7 공무원, 2009. 07.24).

IV. 의연금 지원제도의 개선방안

의연금은 본래 보상성격의 보험금이나 정부보상금과는 전혀 다른 형태의 지원으로 뜻하지 않은 재난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이웃사랑과 돕는 마음이라는 동양적인 상부상조의 문화 속에 위로금의 성격이 중요한 본질이다. 따라서 향후의 지원제도 개선은 이러한 의연금의 목적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전개될 필요가 있다.

우선, 재해구호 의연금의 사용 범위에 관하여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구호위로금의 지원은 슬픔과 고통의 위로와 격려 및 생필품구입 등 생계지원을 위한 목적 달성을 위해 가능한 현금지원 방식으로 지속될 필요가 있다. 둘째, 응급구호 활동에 대해서도 지원을 실시해야 한다. 이러한 응급구호활동의 지원 범위는 이주민에게 전달되는 응급구호 물품구호지원과 긴급구조 활동에 들어가는 최소한의 비용을 의연금으로 할 필요가 있다. 셋째, 긴급복구활동에 대한 지원으로 개별세대의 복구활동과 관련하여 필요한 물품과 노력봉사 및 전문봉사 활동들에 대한 지원을 의연금에서 보조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지속적 구호활동과 프로그램 지원으로서 이주민 입장에서 이들이 필요로 하는 도움과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구호활동과 프로그램의 발굴하고 이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의연금 충당하는 방식이다. 마지막으로 기타 배분 활동과 관련하여 배분위원회 운영 및 전국재해구호협회의 운영에 대한 비용사용, 배분심사, 평가 및 배분제도개발과 시스템운영을 위한 예산 등 의연금을 통해 이주민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위한 과정과 집행, 평가에 대한 일부의 재정적 지원이 의연금의 범위에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의연금의 바람직한 지원 형태를 제도적으로 반영해야 한다. 현재 의연금의 지급은 절대적으로 행정편의, 공급자 중심의 시스템으로 이루어져 있다. 따라서 향후에는 우선적으로 고객의 의사와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수요자 중심 시스템으로 변화가 우선되어야 한다. 수요자 입장에서 적시에 필요한 도움, 즉, 현금뿐만 아니라 물품과 자원봉사 등까지도 공평하게 지원 받기를 바라는 이재민의 요구를 이해하고, 차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이 고려되어야 한다. 또한, 이재민의 요구뿐만 아니라, 의연금을 기탁하는 기탁자의 의사를 반영해야 한다. 즉, 재해를 당해 힘들고 고통스러운 이재민들을 신속히 돕고 싶어 하는 기탁자의 의도를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정부는 일정한 기준과 규칙에 따라 신속하고 공평한 구호를 통해 이재민의 생활 안정과 빠른 피해복구 및 피해지역의 민심안정과 주민 불만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되, 이를 위한 기준과 규칙에 있어 현실적합성과 적용가능성을 고려한 체제로 변화해야 한다. 특히, 모집 협력기관들과 일반 국민 그리고 이재민 모두가 모집된 의연금이 낭비 없이 공평하고 효율적으로 이재민들에게 전달되기를 바라며, 의연금의 투명한 관리와 합리적인 배분, 운영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의연금 자체가 갖는 특성을 고려한 지원이 되어야 한다. 재해구호를 위한 의연금은 무엇보다 신속성과 공평성의 일반원칙에 따라 모금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자연재난 피해의 경우 일정한 기준에 의해 지급하는 기본 의연금의 성격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모집 목적의 당해 재해에 대해 모집금액이 충분할 와 모집금액이 부족하거나 모금이 없을 때를 다르게 지원하는 융통성이 필요하다. 또한 저소득층 등 특별히 추가 구호가 필요한 세대에 대하여는 별도

의 기준을 마련하여 의연금이 이재민의 생활지원에 현실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재해로 인해 발생하는 재해 상황과 이재민의 수요를 고려하여 개별적 상황에 필요한 구호를 위한 현금 지원 외의 다양한 사업프로그램을 통한 구호활동으로 지원이 전개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의연금 지원 방식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의연금을 전액 현금으로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 일반 시민과 이재민, 공무원의 의견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일반 시민과 공무원은 각각 45.1%와 43%만이 전액 현금 지원을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이재민은 76.6%가 전액 현금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의연금을 현금과 물품으로 지원하는 것의 필요성에 대해 일반 시민과 이재민은 각각 78.3%와 74.7%가 현금과 물품으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인데 반해, 공무원의 경우에는 53.9%가 찬성 의견을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집단 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셋째, 의연금을 현금과 복구서비스로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일반 시민은 83.4%, 이재민은 72.9%, 공무원은 52.6%가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시민 및 이재민의 인식은 공무원의 인식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넷째, 의연금을 의료·심리 상담 등 별도 서비스로 지원하는 것에 대한 필요성을 조사한 결과, 일반 시민은 74.1%, 이재민은 61.1%, 공무원은 52.5%가 필요한 것으로 인식하였다. 다섯째, 의연금을 소외계층에 대한 서비스 제공 단체에 대해 지원하는 것에 대한 필요성을 조사한 결과, 일반 시민은 81.7%, 이재민은 67.3%, 공무원은 65.4%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응답 집단별 차이를 검정한 결과 일반 시민이 이재민이나 공무원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V. 결론

이 연구에서는 재해의연금의 성격에 맞는 합리적인 의연금 지원 제도를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의 주요 내용으로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의연금의 의의를 살펴보고 의연금의 유형과 기준을 제시하는 한편, 관련된 국내외 선행연구를 검토하였다.

현재 의연금 지원 제도에 대하여 공무원, 기탁자 및 일반 시민, 이재민 등의 인식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현행 의연금 지원 체계에 대하여 회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재민은 의연금이 일상생활로 복귀하는데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많았다. 둘째, 의연금에 대한 낮은 인식도로서, 평소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의연금의 목적과 취지에 대해 홍보가 필요하다. 셋째, 재해복구 비용에 대하여 사전에 마련할 수 있는 정책이 요구된다. 특히 공장이나 사업체는 재해복구를 대비한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여 재해상황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넷째, 의연금 사용처에 대하여 이재민 개개인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며, 소외계층에 대한 추가지원 역시 매우 필요하다. 다섯째, 의연금 지원 방안에 대하여 전액현금지원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많았으나 현금과 함께 물품이나, 복구 서비스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비슷한 수준으로 많았다. 의연금의 대부분을 현금으로 지급하되 재해복구에 필요한 물품이나, 복구서비스, 심리·의료상담서비스도 동시 지원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여섯째, 소규모 재난 시 의연금 모금에 대하여, 기존의연금 적립금에서 지급하는 방안에 대해 일반시민, 이재민, 공무원 모두 긍정적으로 응답하였다. 따라서 소규모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 기존의 의연금 적립금에서 충당하는 방안을 검토해야한다.

의연금은 본래 보상성격의 보험금이나 정부보상금과는 전혀 다른 형태의 지원으로 뜻하지 않은 재난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이웃에 대한 위로금의 성격이

중요한 본질이다. 따라서 향후의 의연금 지원제도는 이러한 의연금의 성격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다.

첫째, 위로금 성격의 의연금 현금 지원은 슬픔과 고통의 위로와 격려 및 생필품 구입 등 생계지원을 위한 목적 달성을 위해 현금지원 방식이 유지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위로금 성격의 현금지원뿐만 아니라 재건의연금 지원, 생활의연금 지원, 복지의연금 지원을 위한 제도가 함께 마련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재해지역 이재민의 복구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봉사단체 활동에 대한 지원을 하는 것이 요구된다. 넷째, 이재민 중에서도 독거노인 가정 등 소외계층에 대한 추가지원을 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재민 입장에서 이들이 필요로 하는 도움과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구호활동과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이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의연금으로 충당하는 방식이다. 다섯째, 의연금의 바람직한 지원 형태를 제도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향후에는 고객의 의사와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수요자 중심 시스템으로 변화가 우선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현실적인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현행 중앙정부의 지급기준에 의한 현금지급액은 일부 줄이고, 현재 의연금 사용이 없거나 부족한, 긴급구호 또는 장기구호, 장기복구, 비상구호 적립금에 대한 사용을 확대하는 것이다. 둘째, 모금 후 신속지원 될 필요가 있는 기본적인 이재민 지원 의연금 지급기준은 모금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재해에 공통으로 적용하며, 의연금 보유액을 고려하여 정부와 협의하여 부족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비율을 낮추어 배분, 지원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야 한다. 셋째, 특별 추가 구호가 필요한 지원 대상에 대하여는 배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추가구호 의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특별 추가지원을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 김승권. 2002. 전국재해구호협회의 중장기 발전방안. 한국보건의사회연구원 정책보고서 2002-38. 한국보건의사회연구원-전국재해구호협회.

▷ 소방방재청. 2005. 2005년도 재해구호사업 지침.

▷ 소방방재청. 2007. 재해의연금 관리·운용 규정. 소방방재청.

▷ 신선인. 2001. 재해 및 재난 구호시 요구되는 정신보건사회사업서비스에 관한 연구.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10: 61-83.

▷ 심성화. 2004. 우리나라의 이재민 구호정책에 관한 연구 - Gilbert와 Specht의 정책분석틀을 중심으로. 충북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계복. 2001. 재해관리와 효율적인 재해구호체계. 방재행정 세미나, 제6회. 행정자치부-국립방재연구소.

▷ 이재원. 2000. 지방정부의 이재민 구호품 전달체계 개선방안: 수해이재민 구호를 중심으로. 부경대학교논문집. 5(1): 67-87.

▷ 이재은. 2006. 재난관리론. 대영문화사.

▷ 이재은·유현정. 2009. 재해구호에서의 의연금 지원에 관한 실증분석: 기탁자와 이재민의 기대·성과·만족도 인식 비교. 국정관리연구. 4(1): 131-156.

▷ 이재은·양기근. 2006. 한국의 재해의연금 모금 및 배분체계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미국·일본·독일·프랑스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행정논총(서울대). 44(4): 339-372.

▷ 이주호. 2007. 재해구호 정책네트워크 모형에 관한 연구. 충북대학교 행정학석사학위논문.

▷ 재해구호법[전부개정 2007.1.26 법률 제8275호].

▷ 전국재해구호협회. 2004. 2004 전국재해구호협회. 서울: 전국재해구호협회.

▷ 전국재해구호협회 연보. 2004.

▷ 표준어국어사전. 2007.

▷ 한동우·이재은·유태균·홍백·노연희. 2004. 우리나라의 재해 재난관리 및 긴급지원체계의 실태와 개선방안. 서울: 사회복지공동모금회.

▷ Doury, C. M. 1972. Disaster and Charity: Some Aspects if Cooperative Economic Behavior. *American Economic Review*, 69(1): 142-151.

▷ Gregory Kutz. 2007. *Hurricanes Katrina and Rita Disaster Relief: Prevention Is the Key to Minimizing Fraud, Waste, and Abuse in Recovery Efforts*. United States 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

▷ Gronbjerg, K. 1993. *Understanding Nonprofit Funding: Managing Revenues in Social Services and Community Development Organizations*. San Francisco: Jossey-Bass Publications.

▷ Jalali, R. 2002. Civil Society and the State: Turkey after the earthquake. *Disasters*. 26(2): 120-139.

▷ Kutz, Gregory. 2007. Hurricane Katrina and Rita Disaster Relief.

▷ Max, Stephenson, Jr. 2005. Making Humanitarian Relief Networks More Effective: Operational Coordination, Trust and Sense Making. *Disasters*. 29(4): 337-350.

▷ Morris, Saul S. 2003. The Allocation of Natural Disaster Relief Funds: Hurricane Mitch in Honduras. *World Development*. 31(7): 1279-1289.

▷ Paul, Bimal Kanti. 2006. Disaster Relief Efforts: An Update. *Progress in Development Studies*. 6(3): 211-223.

▷ Shaw, Rajib and Katsuihiro Goda. 2004. From Disaster to Sustainable Civil Society: The Kobe Experience. *Disaster*. 28(1): 16-40.

▷ Sobel, Russell S. and Peter T. Leeson. 2007. The Use of Knowledge in Natural-Disaster Relief Management. *The Independent Review*. VI(4): 519-532.

▷ Thomas, Anisya and Lynn Fritz. 2006. Disaster Relief. *Harvard Business Review*, Nov. 1: 114-122.

▷ Wordon, Q., & Yitzhaki, S. 2002. Evaluating the Impact of Government Programs on Social Welfare: The Role of Targeting and The Allocation Rules among Program Beneficiaries. *Public Finance Review*. 30(2): 102-103.

李在恩: 연세대학교에서 행정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논문: 한국의 위기관리정책에 관한 연구: 집행구조의 다조직적 관계 분석을 중심으로. 2000), 현재 충북대학교 행정학과 부교수로 재직중이다. 주요 관심분야는 위기관리, 조직이론, 정책집행론 등이며, 재난관리론(공저, 2006) 등의 저서와 “국가갈등관리의 효율화 방안”(2009), “Comprehensive Security and Crisis & Emergency Management for Protecting Critical Infrastructure”(2009), “한국 행정학에서의 위기관리 연구경향 실증분석: 1987년부터 2007년까지의 연구논문을 중심으로”(2009), “국가위기관리의 새로운 영역 설정과 추진 전략: 국민생활안전 위기 영역의 분류와 운영 방안 모색”(2007) 등이 있다(jeunlee@chungbuk.ac.kr).

접수번호: #091124-01

접수일자: 2009. 11. 24.

심사완료: 2008. 12. 17.